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꽃임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15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월 16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나.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다.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조례는 2023년 4월, 충청북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음

- 충북도는 이차전지산업을 대표적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기술 시장 경쟁력강화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지난해 7월에는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다만, 지난해 3월 제정 조례안 심사⁷⁾ 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보완하여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후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계획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의미가 있는 개정임
- **안 제5조**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하여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위원회 설치의 당위성과 구속력을 강화함
- **안 제6조**는 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여 지난해 3월 조례안 심시 시 제기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함
 - 이차전지산업과 위원회 운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과학인재국장에서 경제부지사로 격상하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도 위원장 지명자에서 담당 업무 과장으로 변경함

7)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꽃임 의원은 조례안 심사 시 도의회 배제, 위원회 비상설화 문제, 위원회 위상 및 중요도, 위원회 설치의 당위성, 위원 제척 요건 등에 대해 지적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이차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미흡한 부분은 차후에 보완하기로 하고 ‘원안가결’ 하였음.

- 임명 또는 위촉위원도 충북도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함
- 특히,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가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심의·자문 종료 시 해산하는 방식의 비상설 규정을 삭제함
- **안 제7조**는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맞도록 요건을 추가함
- **안 제9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시하여, 위원회 활성화는 물론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주요 정책과 시책 등의 심의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함
- 담당 부서인 과학인재국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차전지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지원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고 의견을 제출하였음

다. 종합의견

- **(필요성)** 이 조례안은 충북도 이차전지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함**
- **(타당성)** 또한,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 위원회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활성화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음**
- **(법적합성)** 상위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